##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7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조정식・김홍걸・신정훈

강훈식 · 김주영 · 양정숙

송갑석 · 정필모 · 민형배

강선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함)의 인정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가입증명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정한 신청과 신고의 접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조세의 감면이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 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제14조
	의2, 제14조의3 또는 제14조의4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민
	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
	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
	<u>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
	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
	공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수수
	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전산정
	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

 공 요청, 그에 따른 이용 및 제

 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
 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